「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과거의 고민에 이어 오늘날 산업보건의 뜨거운 감자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일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월간 「산업보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샅샅이 알려드립니다.

오병선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문위원

1.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약칭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한다.

본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금년도 1월 8일 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영계와 노동계, 언론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음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의 장으로 분류(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구분되어 있다.

지난 7월 9일 시행령(안)이 공개되고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다. 본 법률은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내용과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과 함께, 법에서 정한 준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중대재해사고도 예방되면서 처벌이 면책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적용됨을 보장하는 제도적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2022년 1월 27일부터는 본 법률이 시행된다. 본 법률의 특징은 법과 시행령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이 없다.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예방보다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조직의 최고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처벌법의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금부터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본 법에 따라 기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입법예고(안)을 참고하여 준비를 한 다음 시행령이 확정 공표되면 확인과정을 거쳐 수정하면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우리 기업에 적용되는 근거조항과 의무사항은 무엇이고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응계획도 명확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사업장별로 다음 사항을 자문(自問)자답(自答)해보자.

- 우리 회사·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 대상이라면 구체적 근거조항과 준수의무는 무엇인가?
- 조직 내에서 누가, 무엇을 준비하여 실행해야 할까?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대상자는 누구일까?

2.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처벌대상자 등에 대한 이해

법 제1조는 목적이다. 요지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이다. 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위에서 자문(自問)한 내용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요지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 개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히,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시행령 제2조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표 1〉 시행령 〈별표1〉 요약

1.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드, 일산화탄소의 급성중독	13. 기타 화학적 인자_산안법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14종) 및 별표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09종)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노출된 급성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 등의 급성중독	14.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된 기도과민증후군
3. 수은 또는 그 화합물의 급성중독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4.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의 급성중독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노출 독성간염
5. 벤젠에 노출되어 급성중독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C형 간염 · 매독 등
6. 톨루엔, 크실렌, 노말핵산 등 유기화합물의 급성중독	18. 습한 곳에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된 급성중독	19. 동물/사체, 짐승털/가죽, 넝마, 고물 발생 탄저/브루셀라증
8. 황화수소에 노출된 급성중독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중독	21. 고기압/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잠수병 등
10. 불화수소, 불산에 노출된 급성중독	22.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11. 인(백린, 황린)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중독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12.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급성 질병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고해야 할 사항은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사고뿐 아니라 습한 곳 또는 오염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산소결핍증, 방사선증, 열사병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종사자란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첫째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둘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누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안전보건담당 임원이 있다면 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다. 결론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전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자원(인력, 예산, 조직, 시설)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의 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다. 어느 기업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는 경우 또는 건설회사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방에 건설 현장이 있는 경우에, 공장장과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공장 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준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개의 법이 적용된다면 처벌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절절한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대상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정리하면 공장 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표 2〉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책임 관련

〈참고〉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시설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이며 그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이 광범위하다.

공중이용시설이란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시설로서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의료기관 등이다. 둘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설로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등이다. 셋째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설로서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각종 학원, 목욕장업(사우나), 인터넷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장, 안마시술소 등이다. 넷째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교육시설은 제외된다.

공중교통시설이란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노선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자는 서울본사에 있는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현장소장)이다.

3. 중대산업재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5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②항에서 제1호·제4호의 구체적인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현재 입법예고가 된 시행령의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8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❶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❷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❹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집행·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❺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❻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연 2회, 반기 1회)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되도록 조치할 것

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❽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또한,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5조에서 아래와 같이 3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❶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것

❷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참고로 법 제3조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본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도급, 용역,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설비,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4.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주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일 것이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주로 이용자 또는 일반시민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서 자체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우선, 법 제2조의 중대산업재해 정의와 관련한 준비〉

첫째,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할 때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

☞ 이것은 현장점검과 공정 또는 기계·설비의 운전조건과 위험특성, 위험성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중점관리할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취급이나 작업환경 또는 작업이 있느냐 확인하는 것 ;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내용을 참조

☞ 이것은 작업부서 또는 장소별로 해당하는 화학물질명, 사용량, 작업특성과 작업시기 등을 목록화(List up)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조직에서 직업성 질병자와 연관된 관리대상 위험요인과 작업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

이 조항과 관련한 내용은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갖추라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들과 중복된다.

특히,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을 받아 실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보면 이미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충실한 운영과 실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준비 또는 확인 단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행령 제4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8개 항목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운영상태를 자체 점검하는 것.

☞ 8개의 세부항목별로 대비표를 작성해야 한다. 대비표에는 세부항목별 내용, 우리 조직의 관련 절차 또는 업무규정, 현재의 운영실태, 미비사항 보완대책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좋을 듯하다.

둘째, 시행령 제5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3개 항목에 대해 우리 기업의 운영상태를 자체 점검하는 것.

☞ 3개의 항목별로 대비표를 작성해야 한다. 대비표의 내용은 첫째사항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도록 하면 된다.

셋째, 법 제4조의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 아차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발생이 보고되고 근원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실행 및 관리하고 있는지를 자체점검해야 한다. 만약 미흡하다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시정조치와 관련한 활동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충실한 실행이 관건이 될 것이다.

넷째, 법 제4조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 이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시청 등에서 감독권한과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 기업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

* 참고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의사소통 절차서에 따라 문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후속조치 및 피드백 관리하도록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를 구해서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에 따른 처벌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예방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실한 실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준비단계를 요약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잘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위험성평가와 안전작업절차서, 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 위험작업 현장감독 등이 중요한 필수적 활동이다.
*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의 파악과 준수평가 활동과 연계성이 있다.

둘째, 중대재해의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지, 구체적 의무내용은 무엇인지, 도급에 따른 책임과 관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명확해야만 과정에 대한 관리가 될 것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차이점을 알아 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두 법의 특성을 표로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	목적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등)과 시민(이용자 등)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구체적이며 명시적 안전 · 보건조치 의무 부여(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안전의무 범위 (의무 강화)	포괄적 위험방지 의무 부여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및 제공 · 지정하는 장소로써 지배 · 관리하는 장소	도급사업 책임범위 (범위 확대)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처벌 대상 (중심 이동)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 사망사고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그 외 위반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 처벌기준 (처벌 강화)	* 사망사고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사고 등 : 10억 원 이하의 벌금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 배상 책임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입증 근거자료를 만들어 유지하는 것이다. 고용노동에서도 시행령(안)을 제정하면서 경영책임자의 책임의식과 리더쉽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귀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자료 출처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안)
- 법무법인(유) 율촌 :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산업안전 킴플라이언스 방안', '쟁점토론' 발표자료
- K&C Webinary 배포용 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 2021년 2월호
-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사 관련 자료 등